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김길영 의원입니다.

지난 3월 31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,

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, 제1~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제2·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용적률 기준보다 50% 낮게 규정하여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이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500㎡ 미만의 소규모 필지는 기부채납 등 공적 기여를 통한 용적률 상향이 어려워

사업성이 저하되어 건설경기 침체로 문제가 이어집니다.

이에 제2·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필지(500㎡ 미만)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「국토계획법」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개발이 가능토록 해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